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5553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승만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변 론 종 결 2020. 12. 9.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249,704,9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249,704,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전남 무안군 D 지상에 별지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총 22개 구분건물로 구성된 ‘E’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각 구분건물을 지칭하는 경우 해당 호수를 붙인다)을 신축하여, 2013. 2. 14.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건물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3. 28. 31,000,000원, 2012. 6. 7. 48,000,000원, 2013. 12. 23. 50,000,000원, 2013. 12. 27. 20,000,000원 등 합계 14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마지막 대여일인 2013. 12. 27.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0원, 채무자 유한회사 F(현재 상호 : 유한회사 G, 대표이사 피고 B, 이하 ‘G’이라 한다), 연대보증인 피고 B, 변제기 2014. 6. 30.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4. G와 사이에 대여금 120,000,000원, 이자 연 20%, 변제기 2015. 7. 21., 채무자 G, 연대보증인 피고 B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H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대여한 차용금으로 대체하고, 피고 B이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2016. 3.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바. 피고 B은 2017. 6.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7. 6. 16. 접수 제11114호로 2017. 6. 1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사.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6. I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5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9. 1. 16. J에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이중 청구가 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B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피고 C를 상대로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은 실제 90,000,000원이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더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대여금을 12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제5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및 피고 B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위 주장의 취지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의 액수가 실제로는 9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통모하여 허위의 대여금인 12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9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여계약 부분은 무효여서 피고 B이 그 초과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2015. 12. 1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H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실제 대여금채무가 90,000,000원만 남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상가 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남아 있는 대여금채무액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 B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액수 중 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 C는 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B이 2013. 3.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K 주식회사에게 신탁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고, ② 원고는 피고 B이 2013. 6. 5.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있다는 것과 그 무렵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2015. 12. 17. 피고 B와 사이에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 H호에 관하여 경매신청이 있었던 2016. 10. 7.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6. 16.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가 주장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으로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 C의 위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B이 2017. 6. 16.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7. 1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C의 악의

1) 관련 법리

채무자는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수익자와 통모하여 수익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섬유공장 건물 및 그 대지를 수익자에게 매각하되, 수익자는 그 매수대금을 한 푼도 현실로 지급함이 없이 그 대금의 일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채무자가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용자금의 반환채무를 수익자가 인수하며, 그 나머지 금원은 위 공장 건물을 위 채무자가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비록 소론과 같이 채무자가 수익자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원사를 전량 공급받고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현 상태대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가액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위 매각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L 명의로 각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및 3,240,000,000원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2017. 6. 16.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1,172,292,160원 및 484,621,151원 등 합계 1,656,913,31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3,71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7. 6. 16.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B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체납함은 물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무 166,224,657원($=120,000,000 \times 20\% \times 703\text{일} / 365\text{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L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1,656,913,311원($=1,172,292,160\text{원} + 484,621,151\text{원}$) 외에도 수십 명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수의 강제집행, 보전처분집행을 당한 점, ③ 피고 B, C 모두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무액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의 채무를 피고 C가 새로운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 투자 수익금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⑤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하여 45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715,000,000원에서 피고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 B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다는 2,10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그 나머지 가액이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여, 피고 C로서는 사실상 자신의 채권액보다 훨씬 많은 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은 피고 B이 그 소유 재산만으로 자신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도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상태가 심화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6. 1 주식회사 명의로, 2019. 1. 16. J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49,704,918원 $\{=120,000,000\text{원}+120,000,000\text{원}\times 20\%\times(5\text{년}+148\text{일}3)/366\text{일}\}$, 원 미만 버림}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더 적은 249,704,918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49,704,9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49,704,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에 있는 E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854.81㎡

1층 602.94㎡

2층 612.92㎡

3층 612.92㎡

4층 612.92㎡

5층 612.92㎡

6층 612.92㎡

7층 419.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4.8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 대 89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98.1분의 26.01

[별지2]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에 있는 E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854.81㎡

1층 602.94㎡

2층 612.92㎡

3층 612.92㎡

4층 612.92㎡

5층 612.92㎡

6층 612.92㎡

7층 419.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O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5.5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 대 89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98.1분의 26.20

[별지3]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에 있는 E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854.81㎡

1층 602.94㎡

2층 612.92㎡

3층 612.92㎡

4층 612.92㎡

5층 612.92㎡

6층 612.92㎡

7층 419.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2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 대 89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98.1분의 34.88

[별지4]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에 있는 E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854.81㎡

1층 602.94㎡

2층 612.92㎡

3층 612.92㎡

4층 612.92㎡

5층 612.92㎡

6층 612.92㎡

7층 419.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82.4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 대 89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98.1분의 50.02

[별지5]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에 있는 E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854.81㎡

1층 602.94㎡

2층 612.92㎡

3층 612.92㎡

4층 612.92㎡

5층 612.92㎡

6층 612.92㎡

7층 419.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85.9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 대 89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98.1분의 50.99

[별지6]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에 있는 E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854.81㎡

1층 602.94㎡

2층 612.92㎡

3층 612.92㎡

4층 612.92㎡

5층 612.92㎡

6층 612.92㎡

7층 419.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84.3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 대 89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98.1분의 50.56

[별지7]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에 있는 E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854.81㎡

1층 602.94㎡

2층 612.92㎡

3층 612.92㎡

4층 612.92㎡

5층 612.92㎡

6층 612.92㎡

7층 419.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S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38.1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 대 89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98.1분의 65.35

[별지8]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에 있는 E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854.81㎡

1층 602.94㎡

2층 612.92㎡

3층 612.92㎡

4층 612.92㎡

5층 612.92㎡

6층 612.92㎡

7층 419.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T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6.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무안군 D 대 89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98.1분의 21.11

1) 2015. 7. 15.부터 2017. 6. 16.까지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M 사건에 의하더라도, 배당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 B의 채무 합계액만

8억 4,500여 만 원에 달하였고, 위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만 48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참조).

3) 5년 148일=2015. 7. 15.부터 2020. 12. 9.까지